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헌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인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확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헌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최근 세무관련 기사로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어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 심사청구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9월에 주택을 3억1백만원에 양도한 바, 2002년 11월에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 A의 취득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천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년 11월에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며,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를 추징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2010년 1월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므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심사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무엇이며, 아울러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무한정 존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한 내에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이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개념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로써 권

〈표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세목	구분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국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이외의 경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하는 경우	15년
	이외의 경우	10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조세조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원인의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된 경우)가 이루어진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 국기법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조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경우 : 청구일로부터 2월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 제척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이월결산금 공제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재산, 미등기재산, 국외소재재산, 등기가 불필요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안 날부터 1년

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부과에 정부부과 과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의무를 정부가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진신고 납세제도 하에서는 무신고나 오류 또는 탈루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부과권의 존속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은 소멸된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표 1〉 참조

다. 제척기간의 기산일

〈표 2〉 참조

2.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가. 개념

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행사하지 않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부과에 의하여 조세를 확정하고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를 강제하는 등의 세액수납을 위한 일련의 권리를 징수권이라 하는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시효의 중단

〈표 2〉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분	기산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 (중간에납 · 예정신고 · 수정신고기한은 포함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또는 인지첨용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법정납부기한의 익일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익일
공제세액 등을 의무불이행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표 3〉 소멸시효의 기산일

구분	기산일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익일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익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익일
인지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익일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익일

〈표 4〉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구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 소멸시효
성격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불행사기간
기간	5 ~ 15년, 평생	5년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소급효 유무	소급효 없음	소급효 있음
시효이익의 포기	포기할 수 없음	포기할 수 없음
소송상 주장 필요여부	소송상 주장할 필요 없음	소송상 주장할 필요 없음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및 정지(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인 기간) 사유가 있다.

소멸시효 역시 완성된 이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나.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며,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표 3〉 참조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가. 소급효의 유무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효과가 있으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나. 중단 및 정지의 유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및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주장이나 의무자의 승인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는다.

반면에 소멸시효는 중단 및 정지가 있어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정지사유가 있으면 정지사유종료후에 잔여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이익을 받을 자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세채권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를 갖는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포기할 수 없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

[세금절약가이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세요~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 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인이 있는 자가

-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4천만원이 되나,
-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